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변 호	6-61
------------	------

제출년월일 : 2011 . 2 .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1. 제안이유

최근 복잡·다양화되는 법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시 법무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통해 신뢰성 있는 법치행정의 구현과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고문변호사의 정원수를 증원하고, 고문변호사에게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정원수 증원(안 제2조제1항)

○ 당초 : 4인 이내 → 변경 : 5인 이내

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재정비(안 별표1)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4인 이내”를 “5인 이내”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기획감사실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기획감사실장 홍 현 섭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의회법무담당 박 상 덕
	담 당 자 성명 · 전화	남 지 영 860-2032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수금

구 분	지 급 기 준			소송비용청구시 구 비 서 류
	사 건 별		착 수 금	
민 사 소 송	가. 신청사건		○ 변론 또는 심리가 있는 경우: 50만원 ○ 변론 또는 심리가 없는 경우: 20만원	○ 청구서
	나. 본 안 사 건	(1)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200만원 이내	○ 청구서
		(2)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 로 한다)	○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 청구서 ○ 소가증명원 또는 청구확정서 사본
	다.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행 정 소 송	가. 신청사건		○ 민사소송에 준한다.	민사소송에 준한다.
	나. 본 안 사 건	(1)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민사소송에 준한다.	
		(2)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을 기준으 로 한다)	○ 민사소송에 준한다.	
	다. 환송심		○ 민사소송에 준한다.	

※ 소송도중 청구가 확장되거나 감축된 경우에는 그 심급에서 청구금액이 큰금액을 소송물로 본다.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서의 구 비 서 류
가. 당해 사건의 심급중 가장 높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60퍼센트이상 승소한 것으로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화해 및 조정사건을 포함한다)에만 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인락·소취하(쌍방취하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변론이 3회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상소된 사건은 각 심급별로 60퍼센트이상 승소한 경우에 승소비용에 의한 사례금을 각각 산출하여 이를 합산지급한다. 다만, 승소사례금의 총액은 당해 사건의 심급중 가장 높은 착수금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중인 때에 수임변호사가 당해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청구서 ○사건확정 증명원 ○소취하증명서등

3. 기타비용

지 급 기 준	구 비 서 류
가. 인 지 대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나. 송 달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 검 증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라. 감 정 료 : 실제로 소요된 금액 마. 증인여비 : 실제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	○청구서 ○납부영수증등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개업중 인 변호사중에서 <u>4인 이내</u> 의 고문변 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 ----- <u>5인 이내</u> ----- ----- ② ~ ③ (현행과 같음)